<table>
<tr><td colspan="2">사건명</td><td colspan="4">Mirror Worlds v. Apple</td></tr>
<tr><td colspan="2">소의 종류</td><td colspan="2">특허침해소송 항소</td><td>권리별</td><td>특허</td></tr>
<tr><td colspan="2">원고</td><td colspan="4">(항소인) Mirror Worlds, LLC</td></tr>
<tr><td colspan="2">피고</td><td colspan="4">(피항소인) Apple Inc.</td></tr>
<tr><td colspan="2">권리사항</td><td colspan="4">U.S.P. 6,006,227 (등록일 : 1999.12.21, 출원일 : 1996.06.28)
“Document stream operating system"
U.S.P. 6,638,313 (등록일 : 2003.10.28, 출원일 : 1999.09.17)
“Document stream operating system"
U.S.P. 6,725,427 (등록일 : 2004.04.20, 출원일 : 2001.12.10)
“Document stream operating system with document organizing and display facilities"</td></tr>
<tr><td rowspan="3">원심</td><td>법원</td><td>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td><td>사건번호</td><td colspan="2">08-CV-0088</td></tr>
<tr><td></td><td></td><td>소송일</td><td colspan="2">2008.03.14.</td></tr>
<tr><td>판결</td><td colspan="4">특허 비침해</td></tr>
<tr><td>요지</td><td colspan="4">지방법원은 원고가 특허방법의 실제 완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직접침해 및 유도침해를 부인하였으며 비침해로 판결하였다.</td></tr>
<tr><td rowspan="4">항소심</td><td>법원</td><td>CAFC</td><td>판례분석</td><td colspan="2">□ / □</td></tr>
<tr><td>사건번호</td><td>No. 11-1392</td><td>판결일</td><td colspan="2">2012.09.04.</td></tr>
<tr><td>판결</td><td colspan="4">원심 확정</td></tr>
<tr><td>요지</td><td colspan="4">CAFC는 원심의 침해판단에 오류가 없으므로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td></tr>
<tr><td colspan="2">사건의 개요</td><td colspan="4">원고(Mirror)는 2008년 3월 피고(Apple)의 Mac OS X 운영체계를 장착한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하여 소송특허 3건의 직접침해 및 유도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심공판에서 배심원은 고의적 직접침해를 인정하고 U$208.8M의 손해배상을 평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평결 후 JMOL에서 법률문제로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원고가 직접침해 및 유도침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직접침해와 유도침해를 부인하고 손해배상 평결을 파기하였다.
지방법원은 JMOL에서 ‘313특허 및 ’427특허의 균등론에 의한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며, ‘227특허에 대하여는 특허방법의 모든 단계를 피고가 수행한다는 직접침해 또는 유도침해에 관한 입증과 손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CAFC는 직접침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적인 증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적 증거로도 침해는 판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청구된 방법의 모든 단계가 피고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 사건 유고침해와 관련하여 비침해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로 직접침해의 발생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유도침해가 필연적으로 예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td></tr>
</table>

(C) Oneness Co. Ltd. 2012.10.04.